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이유

- 가.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을 비영리단체,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결하여 사회공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련 지역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운영의 질적 향상 제고
- 나. 사업의 기획·운영 및 수행에 필요한 지역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확보, 고용·노동·경영 등의 민간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나. 추진근거

- 1)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 3)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5조, 제14조
- 4)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다. 위탁사무

- 1) 참여기관 및 참여자 모집
- 2) 참여자 선정·사전교육, 참여자 이력·통계 관리

- 3) 참여자 참여수당·활동실비 지급
- 4) 참여기관과 참여자 연계 매칭 및 활동내역 관리
- 5) 그 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활동 전반

라. 위탁기간 : 2025. 협약체결일 ~ 2025. 12. 31.

마. 소요예산 : 244백만원 \* 2024년 기준 산정

바. 위탁조건

- 1)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단,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기관은 제외)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마) 행정기관

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닌 경우 제외)

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2) 최근 1년 이내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하며 특정 정당·종교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하는 기관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2024년 제3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아.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

1) 선정방법 : 서류심사(1차) 후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2차)

2) 평가내용 :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종합 심사

구 분	평가항목(안)
사업수행기관 전문성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단체현황(설립목적, 사업목표 등)</li> <li>▪ 최근 3년간 취업·일자리 창출 등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li> <li>▪ 운영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관련분야 경력자 등 적정 인력 구성)</li> </ul>
사업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목표·비전·세부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li> <li>▪ 참여자·참여기관의 모집·관리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li> <li>▪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li> <li>▪ 예산의 타당성 및 집행계획의 효율성</li> </ul>
지역사회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연계 가능성</li> <li>▪ 지역경제의 수혜도 및 파급효과</li> </ul>

자.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3. 부서의견

가. 사업 특성상 다양한 자격요건의 참여자와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지역인적자원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나. 고용·노동·경영 등에 대한 민간의 전문지식 및 인프라 활용 시 사회 서비스 확산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붙임)

# 관계법령

## □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필요한 인력의 양성
6. 고령자 고용 강조기간의 설정과 추진

7.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창업, 청년고용, 해외취업, 고졸·대졸채용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2. 여성과 고령자, 장애인 등 제2조제3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3. 구인·구직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훈련,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일자리센터 운영, 해외취업을 위한 국제교류센터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민간위탁 시 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4년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244	244	244	244	244	1,22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도비	-	-	-	-	-	-
시비	244	244	244	244	244	1,220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244	244	244	244	244	1,220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박재경(☎ 480-2602)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합 계	244,270	
인건비	3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자 : 900,000원×11개월×1명=9,900,000원</li> <li>• 전담자 : 2,000,000원11개월×1명=22,000,000원</li> </ul>
운영비	12,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료 : 300,000원×11개월=3,300,000원</li> <li>• 심사위원회 수당 : 100,000원×3명×2회=600,000원</li> <li>• 심사위원회 식비 등 : 30,000원×8명×2회=480,000원</li> <li>• 사무관리비 : 100,000원×11개월=1,100,000원</li> <li>• 복리후생비(4대보험료) : 200,000원×11개월=2,200,000원</li> <li>• 퇴직적립금 : 250,000원×11개월=2,750,000원</li> <li>• 출장여비 : 40,000원×2명×30회 = 2,400,000원</li> </ul>
사업비	199,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수당 : 2,000원×80명×2회×240시간=76,800,000원</li> <li>- 활동실비 : 12,000원×80명×2회×60일=115,200,000원</li> </ul> </li> <li>• 참여자 상해보험 : 10,000원×160명=1,600,000원</li> <li>• 사전교육 강사비 : 120,000원×2회=240,000원</li> <li>• 사전교육 교재비 : 30,000원×190권=5,700,000원</li> </ul>

소 관 부 서		일자리경제과
입 안 자	과 장	박 영 희
	팀 장	박 명 희
	담 당 자	박 재 경 (480-2602)